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  
제3차 교육위원회

#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 전문기관 지정대상 업무의 확대 등 〉

■ 박충권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868호)

2025. 9.

교 육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선영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전문기관 지정대상 업무의 확대 .....                | 2 |
| 2.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 중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범위 확대 ..... | 6 |
| [참고자료]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 |

## 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박충권 의원 등 13인

2. 발의연월일 : 2025. 6. 16.

3. 회부연월일 : 2025. 6. 17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및 제36조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전문기관 지정대상 업무의 확대

##### 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#### [개정안 조문대비표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3조(전문기관의 지정)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·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| 제33조(전문기관의 지정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 |
| 1. ~ 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 <sup>1)</sup>        |
|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(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)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나. 검토의견

- 학교 등의 현장에서는 매년 교육시설의 훼손·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 실제 최근 5년간 교육시설안전사고의 현황을 살펴보면, 최소 930건에서 최대 1,655건이 발생하여 총 246명이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받았음.<sup>2)</sup>

### [ 교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]

(단위: 건, 억 원, 명)

| 사고 발생 연도 | 발생 건수 | 피해 규모   | 피해자 수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2020년    | 1,655 | 256.3   | 49    |
| 2021년    | 1,025 | 155.6   | 8     |
| 2022년    | 965   | 263.2   | 78    |
| 2023년    | 930   | 182.2   | 52    |
| 2024년    | 1,493 | 212.1   | 59    |
| 합 계      | 6,068 | 1,069.4 | 246   |

주. 해당 자료는 교육시설공제 및 BTL 재산종합공제 상품에 가입한 학교·기관에 한함.

자료: 교육부

-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서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사업과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<sup>3)</sup>

2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교육시설안전사고”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·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.

3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(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)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**공제사업**(이하 “교육시설 공제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**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**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이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시설 공제사업과 교육시설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. 특히 교육시설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은 그 수혜대상이 2022년 11,697명에서 2024년 20,22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.<sup>4)</sup>

[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 안정화 지원 실적 ]

(단위: 회, 명)

| 구 분   | 2022년 |     |        | 2023년 |     |        | 2024년 |     |        | 2025년<br>(1월~6월) |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      | 학교    | 학급  | 참여 인원  | 학교    | 학급  | 참여 인원  | 학교    | 학급  | 참여 인원  | 학교               | 학급  | 참여 인원 |
| 사전 예방 | 76    | 498 | 11,230 | 62    | 520 | 16,700 | 49    | 352 | 15,420 | 37               | 342 | 8,447 |
| 재난 이후 | 3     | 24  | 467    | 8     | 126 | 3,194  | 5     | 158 | 4,808  | 3                | 30  | 640   |
| 합 계   | 79    | 522 | 11,697 | 70    | 646 | 19,894 | 54    | 510 | 20,228 | 40               | 372 | 9,087 |

자료: 교육부

□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에 ‘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’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

4) 교육시설 심리 안정화 사업은 ① 학교 현장에 심리 안정화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 강화하는 **사전예방 교육**과 ② 재난이 발생한 이후 학생, 교직원 등의 **심리적 충격 완화와 사회적응을 위한 재난 이후 교육**으로 구성됨.

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.

- 다만, 현행법은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·단체에 한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<sup>5)</sup> 실제 심리적 치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.
-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·단체 중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 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---

5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전문기관의 지정)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**교육시설 분야의 기관·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**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## 2.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 중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범위 확대

### 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 중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에 연구실 사고도 포함시키려는 것임.

#### [개정안 조문대비표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6조(안전원의 사업)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br>1. ~ 5. (생략)<br>5의2. <u>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</u> | 제36조(안전원의 사업) ① -----<br>-----.<br>1. ~ 5. (현행과 같음)<br>5의2. <u>교육시설안전사고(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</u><br>----- |

### 나. 검토의견

- 대학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은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이며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과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의 자산임. 이에 따라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생 등 연구활동 종사자들

이 연구실 사고의 발생으로 피해를 받더라도 그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이들이 걱정없이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<sup>6)</sup>

-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<sup>7)</sup>에 따라 연구실안전공제 등 보험에 가입한 대학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하여 보험금(공제급여)을 지급받고 있으며, 해당 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와 그 이외의 손실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설공제를 통하여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음.<sup>8)</sup>

□ 그러나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 중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에 연구실 사고를 포함시켜 연구실 사고에 따른 연구종사자의 피해를 해소하려는 것임.

---

6) <참고자료 1> 교육시설 내 연구실 사고 현황

7)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보험가입 등)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8) <참고자료 2> 연구실사고로 인한 현행법상의 지원 현황

- 개정안이 연구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연구활동에 전념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, 학교와 관련한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연구실사고는 현행법 제2조의 교육시설안전사고에 포함됨으로써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<sup>9)</sup>
- 교육부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연구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, 사고조사,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, 법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심리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.
- 참고로, 최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이 발의(의안번호: 2210869, 박충권의원 대표발의) 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188 |

9) 실제 2023년 강원대학교 내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(2023. 5. 2)로 피해를 입은 대학원생에 대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총 5회의 1:1 개인상담(대면)을 지원한 바 있음.

**참고 1****연구실사고 현황**

(단위: 건, 억 원, 명)

| 사고 발생 연도 | 발생 건수 | 피해 규모 | 피해자 수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020년    | 174   | 2.3   | 191   |
| 2021년    | 202   | 3.9   | 216   |
| 2022년    | 185   | 1.8   | 191   |
| 2023년    | 216   | 4.7   | 232   |
| 2024년    | 226   | 2.2   | 226   |

주 1. 연도는 사고발생일 기준이며, 피해자 수는 공제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한함

2. 해당 자료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공제 상품에 가입한 학교·기관에 한함

자료: 한국교육시설안전원, 교육시설 공제정보망(발췌일: 2025. 7. 30.)